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	
연월일	(제 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나. 국민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7조)

- 1) 위원회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등으로 구성함. (안 제3조)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안 제3조)

3)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함. (안 제4조)

4)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 제7조)

다. 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고문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마. 지역위원회, 국민통합정책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2조)

국민대통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와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바. 국민통합지원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4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우리 사회의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각계 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5.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7. 국민통합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10. 국민통합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2.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5명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과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각 자문단의 구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고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고문단을
둘 수 있다.

② 고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단위의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단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지역 단위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 단위별 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6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민통합정책협의회) ①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과 국가전략의 수립, 국정과제의 추진, 국가 주요정책의 연구 및 정책 방향의 수립,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지원 및 지역 간 통합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 ② 제1항의 간사위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4조(국민통합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연구소 등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방송토론,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추진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업무의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업무의 관리·점검 등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전문가,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연 락 처	(044) 205 - 3103